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의 구제를 중심으로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머리말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시에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언론·출판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적인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권은 서로 상치될 수 있으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명예란 개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 명망, 그리고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사회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재진, 2002b). 이 같은 명예에 대한 손상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바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한 침해를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언론에 의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취재, 보도는 시간을 다투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명예를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기자들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감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보도를 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불가피하게 생기는 오보로 인한 침해 외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서정우, 2000). 어떤 경우이건 간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민·형사 소송에 의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권 침해가 법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건수는 1990년대 초에 150건 남짓 되던 것이 그 후 계속 늘어나 98년 이후는 매년 6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60여 건 정도였던 것이 이후 10년간은 139건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한동원, 2001; 이승선, 2001).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1건 정도로 전반에 연평균 6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3.5배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조준원, 2000).

이처럼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 및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언

론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도 용인하던 사회적 풍조가 변하여 이제는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약화되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셋째 1980년대 말부터 언론은 강압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되는 동시에 언론시장이 개방되어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의한 개인적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넷째 아직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이 일반적으로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이 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재진, 2002참조).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각 해결 방식의 운용 현황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2.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과 개선방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특수한 위치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록 그 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방식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언론이 외부의 강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 방식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전예방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사들은 보도에 의해 명예권 침해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을 통해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나 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직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언론사는 사내에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중견 언론인을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임명하여 기사에 대한 자체 비평을 상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종사자들에게 기사 작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보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평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평은 대부분 보도방향이나 기사처리 방식에 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인격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상임으로 옴부즈맨을 채용하여 자사 보도 기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고정칼럼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구나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다수 언론사들이 법조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거나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